

『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, 이주택지가 공급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, 현행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을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임.
- 이에,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돕고,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 택지를 신청하여 이주택지 조성기간까지 임시 이주한 자를 임시 이주자로 정함.(안 제2조)
- 지원예산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의 예산범위내로 정함.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함.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(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78조, 제81조 제1항, 제82조제1항

(2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43조 제2항 제12호

(3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 제4호

○ 입법예고 : 2013. 1. 16 ~ 2. 5(20일간)(의견없음)

○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.(2013.2.12)

5. 검토의견

□ 본 제정조례안은,

○ 옥계동 및 산동면(신당리, 인덕리) 일원 2,457천㎡에 구미국가 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를 위하여 구미시와 한국 수자원공사와 2008. 12. 22.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고, 위탁수수료 수입을 받아,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.

○ 그러나,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 집단 이주지역 조성기간 동안 임시이주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, 현행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.

○ 이에,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돕고,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임시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,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'주택임차료 등의 비용'을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 예산에서, 일부를 지원(제4조)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그 지원금 결정은 “보상협의회”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조례 안(제5조)에 규정되어 있음.

-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는 ‘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’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고(대법원 2000.11.24.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),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·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제1항 제4호에 ‘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,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에는 지방재정을 지출하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이 있으며,
-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,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경우,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례(대법원 2009.12.24. 선고, 2008추 87)도 있음.
- 그러므로,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, 임시이주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안정적인 주거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, ‘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일부지원’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생각됨.
- 아울러, 본 조례 안에서 명시한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구미국가 산업단지 확장단지(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) 사업지구로만 국한하지 말고, 구미 5공단(하이테크 밸리)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조성사업은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이 되도록, 본 조례 안의 신중한 검토가 사료됨.